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

2010. 4. 16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. 4. 6　　마포구청장
나. 회부일자 : 2010. 4. 9
다. 상정일자 : 제15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(2010. 4. 16)
　　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구 병 태 재무과장

가. 개정이유

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36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, 「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 재산 및 물품관리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.

나. 주요개정내용

주요내용은 성산2동 주민센터가 협소하여 별도의 성산2동 자치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소유의 토지 330㎡ (100평)을 21억 2,784만원의 사업비로 매입하여 지상 5층(1층 - 주차장, 2층-품앗이 육아방, 3층-컴퓨터교실, 4층과5층 - 주민자치프로그램실(예정)으로 신축하여 주민의 문화. 복지 생활교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임.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명 금 길)

현 성산2동 주민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서 연면적 약 444평이며 1층 - 민원실, 2층 - 작은 도서관 및 다목적실, 3층 - 강당, 지하 체력단련실 및 동대본부로서 인구 4만 여 명 중 자치회관 수강은 24개 프로그램에 월 296명, 작은 도서관은 회원 4,100명에 1일 300여명, 각 종 민원처리는 월 9,000여건을 상회하고 있어 공간 협소로 인하여 내방주민들의 불편을 초래 하고 있음.

따라서 별도의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함으로서 기존 청사에서는 순수한 동 행정업무 및 민원처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신축 청사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생활복지 관련 사업을 전개한다면 날로 더 해가는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지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예산의 절감은 물론 주민자치 사업의 다양화와 복지수요의 증대에 발맞추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됨.

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하려는 토지는 구민의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하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며, 부족한 시설물을 확충하여 보다 나은 질 높은 행정업무의 쾌적한 서비스와 다양한 복지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욕구 충족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어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다만 매수 후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행정의 독단성을 배제하고 사업의 효율성, 적정성,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주민의 여론수렴 및 설문조사 등 을 다각도로 충분히 실시하여 구민을 위한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며 매입에 따른 예산은 제2차 추경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는 물론 대외적으로는 토지매수 계약과 관련하여

서울특별시 재무과와 상시 정보를 공유하여 토지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